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2
----------	-----

발의일시: 2007. 7.

발의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건수 : 10건
- 유형별 정비현황(세부내역 : “붙임” 개정조례안 참조)
 - 기구 및 업무변경 : 3건
 - 법령개정 : 5건
 - 현실 부적합 : 1건
 - 내용 불부합 : 1건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

4.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5. 붙임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1부. 끝.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충주시포상조례의 개정) 충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포상조례”를 “충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3조의1제3항 중 “서무”를 “시정”으로 한다.

제2조(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개정) 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
15조”로 하고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제76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3조(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관광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제4조(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주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개정)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6조(충주시 시세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한다.

제44조 중 “제43조 및 제44조”를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7조(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8조(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충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와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하며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9조(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연수과장”을 “기술연수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연수기획”을 “지도기획”으로, “생활개선업무담당지도사”를 “생활기술업무담당지도사”로, “기술연수”를 “인력육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수과장”을 “기술연수과장”으로 한다.

제10조(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를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람)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